



[2018. 12. 18.] [29385 , 2018. 12. 18.,]

() 044 - 201 - 7251

1

1 () 「 . 」

2

2 (가) 「 . 」 (" ") 7 1 1 「 」 (" ")

1.

가. 7 1 가 (" 가 ")

. 8 1 가 (" 가 ")

. 13 1 가 (" 가 ")

2.

「 」 (" ")

(7 1

2)

7 1 2

" ") (

1. 가

2. 9

3. 10

4. 11

5. 12

6.

7 1

가

, 가

가

3

,

3 (가) 8 2 4 " "

1.

2. 11 (" ")

4 () 9 1

가

가

8 1

「

」 36 1 ()

() ,

, , 가

1. (), (),

2. (),

3. (3 3

)

4. (), (

),

5.

6.

7. 가

8.

가 1

3

1 가 30 (受理)

3

가

가

9 3 "

"

1.

2. () 100 10 가

3. ()

9 3

가

6

가

30

9 4 "

(

가

가

「

」

가

)

"

1. 가 3 9 4 (" ")

2. 가

5 () 가 10

18 1

가 1
1

3

6 () 15 1
(" ") 90
1 가 가 13
, 36 1 () ,

1. (), (),
- 2.
- 3.
- 4.
5. (),
- 6.
- 7.

7 () 9 가 15 가

8 () 가 16 1 가
14 1 가

4

9 () 17 1
17 2 가 11 1 가
가 가 가

1. 가 , 가 가 가
- 2.
- 3.
1. 17 3 3 " "
1. 12

- 2.
- 3.

10 () 18 1 (" ") 1 20
3 4 ()

- 1.
- 2.
- 3.
- 4.
- 5.
- 6.
- 7.
- 8. 23 가 가
- 9.

11 ()
1. 가 가
2. 10
3. 12
4. 가 , 가 가

(開議)

1 3

12 () 19 2 " "

- 1. 가
- 2.
- 3.

13 () 23 1 (「

」 2 1

. < 2018. 12. 18.>

- 1. 가
가. 8 2 3
. 9
. 12
. 28 1 1 2

. 3 1
. 3 2

2. 가

가. 13 2 3
. 15
. 16
. 28 1 2

1
18.>

23 1 「 . 」 2
1 1 .< 2018. 12.

23 1 「 . 」 2

1
.< 2018. 12. 18.>

1

23 1 .< 2018. 12.

18.>

1. 가

가. 9
. 12
. 3 1

2. 가

가. 15
. 16

23 1 .< 2018. 12.

18.>

1. 가

가. 8 2 3
. 9
. 28 1 1 2
. 3 1
. 3 2

2. 가

가. 13 2 3
. 15
. 16
. 28 1 2

23 1 (「 . 」 2 1)

.< 2018. 12. 18.>

1. 가

가. 8 2 3
. 9
. 12
. 28 1 1 2

2. 가

- 가. 13 2 3
- . 15
- . 16
- . 28 1 2

[[2018. 12. 18.](#)]

14 ()

23 2

「

· 「 10 1

1. 가

- 가. 8 2 3
- . 3 1
- . 3 2
- . 4 1
- . 4 6

3

2. 가

- 가. 16 1
- . 17 3
- . 6

가

「

가

「 32

1. 13 2 3

2. 6

23 2

·

「

·

「 2

1

1

「

「

· < [2018. 12. 18.](#) >

15 () 가

가

(13 14)

가

가

「 「 19

가

< [2018. 12. 18.](#) >

- 1. 9 1
- 2. 15 1

16 () 28

< 28246 ,2017. 8. 16.>

가

9 4 2 , 16

가

· , 3 2 , 4 6 , 8 , 1

< 29385 ,2018. 12. 18.>

[별표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,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,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

				위반
가.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8조제1항제1호	200	400	800
나.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8조제2항	100	200	400
다.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8조제1항제2호	200	400	800